

## 2025년 화성시 예술단 2차 모집 최종합격자 공고

2025년 화성시 예술단 2차 모집 최종합격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5. 3. 19.

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### 최종합격자 명단

모집구분	모집분야	모집직급	최종 합격인원	최종합격자명단(응시번호)				
계			44명	-				
공개경쟁	오케스트라(현악)	기간제근로자	24명	B-00005	B-00007	B-00008	B-00009	B-00010
				B-00012	B-00013	B-00014	B-00015	B-00017
				B-00018	B-00019	B-00020	B-00021	B-00022
				B-00023	B-00025	B-00026	B-00027	B-00029
				B-00031	B-00033	B-00034	C-00018	
	오케스트라 (관악, 타악, 피아노)	기간제근로자	13명	C-00002	C-00003	C-00004	C-00006	C-00007
				C-00009	C-00010	C-00011	C-00012	C-00013
				C-00015	C-00017	C-00020		
	국악단	기간제근로자	7명	D-00002	D-00004	D-00006	D-00008	D-00009
				D-00011	D-00014			

## 임용후보자 등록

- 등록기한 : 2025. 3. 20.(목) 16:00 ~ 2025. 3. 21.(금) 18:00까지
- 등록장소 :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(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)
- 등록방법 : 임용후보자 등록 서류 방문 제출
- 제출서류

제출서류	발급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</li> <li>- 신원진술서 1부</li> <li>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</li> <li>-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약서 1부</li> <li>- 공정채용 확인서 1부</li> <li>-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</li> <li>-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</li> </ul>	첨부문서 작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</li> </ul>	전자후견등기시스템(온라인), 지방법원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초본 1부</li> <li>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</li> </ul>	정부24(온라인), 무인민원발급기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</li> </ul>	정부24(온라인), 졸업학교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명사진(3.5×4.5cm) 이미지 파일(JPEG, PNG 등)</li> <li>※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은 <a href="mailto:lgc@hcf.or.kr">lgc@hcf.or.kr</a>로 송부</li> <li>- 통장사본 1부</li> </ul>	-

- 채용서류반환 :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(임용 확정자 제외)

###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**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**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임용예정일자 : 2025. 4. 2.(수)

### ○ 기타사항

- ▶ 최종합격자는 등록기한 내 임용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대상자 등록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임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에서 제외됩니다.
- ▶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됩니다.
- ▶ 제출 서류는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